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(안상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26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3.

발 의 자 : 안상훈 · 조경태 · 백종헌

고동진 · 박성훈 · 김소희

최보운 · 임이자 · 김은혜

박덕흠 · 한지아 · 인요한

정연욱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여야 하는 시설에는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유치원, 초등학교, 학원, 체육시설 등과 함께 아동복지시설이 있음.

그런데 이러한 아동복지시설 중 ‘학대피해아동쉼터’는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응급·즉각 분리조치하여 보호하는 비공개시설임에도 불구하고, 운영에 필요한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의 조건에 맞게 황색도색 등을 함으로써 쉼터 및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정보 노출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인 아동복지시설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제외시킴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23호마목).

법률 제 호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3호마목 중 “아동보호전문기관은”을 “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24. ~ 34. (생략)	24. ~ 34.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